

등록번호	교통행정과-4304
등록일자	2016.1.25.
결재일자	2016.1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운수지도팀장	교통행정과장	★안전건설국장
이현경	김종필	고영자	전결 01/25 백기운
협 조			

'16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계획



안전건설국
교통행정과

2016년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계획

자동차 무단방치,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로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해,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안전확보,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함

I. 근거법령

-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
- 자동차관리법 제12조(이전등록)
- 자동차관리법 제29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)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(자동차검사)
- 자동차관리법 제48조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

II. 단속개요

□ 단속대상

-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
-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
-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(말소후 계속운행, 임시운행기간경과, 무등록번호판 위·변조차량, 대포차 등)
- 미등록(불법) 이륜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

□ 단속기간 : 2016.1.1. ~ 12.31.

□ 단속방법

○ 우리구 단속 방법

- 관내도로, 뒷골목, 주차장 등 불시순찰 및 주빈신고 적발
- 장기체납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대포차 등 적출
- 관할 경찰서 및 관련부서 협조하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불법이륜자동차 단속

○ 서울시 합동단속반 운영(연2회 일제단속 시)

- 시 주요외곽지역(8개소)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기동단속

□ 단속반 운영

구 분	총 괄	조 편 성		주요순찰지역	비 고
교통행정과	운수지도팀장 김 종 필	A조	김계영, 이현경, 한희주	-주택가 -학교 주변 -공원 주변 -도로상	1일 2회 이상 순찰
		B조	김일섭, 이동욱		

Ⅲ. 단속내용 및 조치계획

□ 세부단속 내용

○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

- 도로, 주택가,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
-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
-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

○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

-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
-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·창문을 임의 설치
- 불법 HID(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)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(전조등, 방향지시등, 제동등 및 기타)
- 소음기(머플러) 불법구조변경
-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
-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(탑설치, 탱크로리 장착 등)
-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

○ 정기검사 미필자동차

-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

○ 무등록 자동차

-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
-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

○ 타인명의 자동차 (일명 대포차)

-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

○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

-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

□ 조치계획

- 무단방치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수시순찰 강화
- 관내 정비업소 및 주민홍보로 불법자동차 양산 방지
-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(이륜차포함)는 강제폐차 후 범칙금 부과 및 수사의뢰
- 불법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관할 시·군·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
-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 조사 후 행정처분

IV. 행정사항

□ 주민 홍보 강화

- 동 주민센터 게시판, 중구광장,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
- 관내 정비·매매업소 홍보 안내문 게시 및 동 주민센터 전광판 표출

【전광판 표출 문안(예시)】

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

- 단속기간 : 2016.1.1. ~ 12.31.
- 단속대상 :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(안전기준위반 차량)
- 처분내용 :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
- 신고방법 및 장소 : 각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교통행정과(☎3396-6223)
☎120(다산콜)

□ 무단방치 자동차 발견시 서면 또는 유선 신고

- 붙임 1. 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문 1부.
2. 단속대상 및 처분규정 1부. 끝.

【붙임1】

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문

■ 신고대상

○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
-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
- 도로, 주택가,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
- 그 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

○ 불법자동차

-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
-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(말소후 계속운행, 임시운행기간경과, 무등록번호판 위·변조차량, 대포차 등)
- 미등록(불법) 이륜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

■ 신고내용

○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
- 방치장소(번지 및 인근의 큰 건물명을 상세하게 신고)
- 방치기간
- 차량정보(차량번호, 색상 및 차명 등)
- 신고인 연락처(신고인 개인정보 보호)

○ 불법자동차

- 차량정보(차량번호, 색상, 차명 등)
- 위반내용
- 위반장소 및 증거자료
- 신고인 연락처(신고인 개인정보 보호)

■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

- 중구청 교통행정과(☎02-3396-6223, 6226)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서면 또는 유선신고

【붙임2】

■ 단속대상 및 처분규정

주요 위반 내용	처분 기준	관련 법규 (자동차관리법)
《무단방치 차량 위반 사례》 ○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○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○ 검찰 송치 - 기한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-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자, 이의를 제기한자	범칙금 20만원~30만원 범칙금 100만원~150만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	법 제26조, 제52조 제81조
《불법구조변경 사례》 ○ 고광도 방전식 전구(HID) 전조등 불법설치 ○ 소음기(머플러) 불법구조변경 ○ 화물차 창유리 임의설치 및 격벽 불법제거	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	법 제34조 (구조장치의 변경)
《안전기준위반 사례》 ○ 방향지시등, 후미등 색상 불법변경 ○ 불법등화 부착 ○ 철재 스포일러(spoiler) 또는 철재 범퍼 불법부착 ○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광각후사경 미설치	과태료 3만원 또는 원상복구명령	법 제29조 (자동차구조 및 장치)
《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》 ○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○ 번호판 훼손한 경우	1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10만원	법 제10조 5항 법 제10조 3항
《이륜자동차 위반 사례》 ○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전자	과태료 50만원	법 제48조

※ 썬팅 단속 : 경찰소관(도로교통법)